

남 양 주 시 보

제2202호

남양주시 고시 제2024 - 476호

지금·도농1-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(정정)

경기도 고시 제2008-153(2008.6.2.)호, 제2011-132(2011.5.23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·고시되고, 남양주시 고시 제2021-251(2021.6.17.)호, 제2021-337(2021.8.19.)호로 남양주 지금·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어 남양주시 고시 제2022- 246호(2022.6.2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지금·도농1-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10. 29.

남 양 주 시 장

■ 정정 사유 : 관리처분계획인가 오기 사항 정정

■ 정정 내용

- 정비구역의 면적 : 15,981.00㎡ → 15,891.00㎡
- 판매시설의 면적 : 650.68㎡ → 560.68㎡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 없음)

가. 종 류 : 재개발정비사업

나. 명 칭 : 지금·도농1-1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312-4번지 일원

나. 면 적 : 15,891.00㎡

남 양 주 시 보

제2202호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 없음)

가. 명 칭 : 지금·도농1-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

나. 사무소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19번길 10, 301호(다산동)

다. 대 표 자 : 지금·도농1-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신재찬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(변경 없음) : 2024. 10. 15.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위치	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로 4312-4번지 일원			
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			
면 적	구역면적	15,891.00㎡		
	대지면적	12,566.00㎡		
	기반시설면적	3,325.00㎡		
건축면적		2,241.28㎡		
건 폐 율	계 획	17.84 %		
연 면 적		58,588.13㎡		
용 적 률	계 획	279.97 %	법 정	280% 이하
규 모	아파트	지하 3층 ~ 지상 29층(총6동, 400세대)		
	판매시설	판매시설 560.68㎡		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	공급대상	주택 규모별(주거전용면적 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판매시설 면적 (㎡)	그밖의 건축시설 면적(㎡)
		계	84A	84B	59A	59B	59C	33		
공급계획	계	400	54	28	186	55	57	20	560.68	
	토지등소유자	91	33	16	17	13	12		95.54	
	보류시설	8			2	3	3			
	일반분양	281	21	12	167	39	42		465.13	
	임대	20						20		

남 양 주 시 보

제2202호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구 분	규 모 [면적 또는 폭원및 연장]					시행자	비용분담자 및 분담 내용
	등 급	류별	폭원(m)	연장(m)	면 적(㎡)		
도 로	소로	(국)2-A			492.00	지금·도농 1-1구역 재개발정비사 업조합	조합에서 설치 후 무상귀속
	중로	(보)3-25			964.00		
	소로	국)도농1-3(1)			4.00		
	소로	국)도농1-3(2)			3.00		
	소 계				1,463.00		
공 원	소공원1				663.00		
	소공원2				1,199.00		
	소 계				1,862.00		
합 계					3,325.00		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: 2025년 4월 이후

(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